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주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호
------	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7. 4.
제 출 자: 고성군수

고성군 주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 연월일	2023. 7. 4.

1. 개정 이유

시·주민안전보험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 및 행정안전부 시민안전보험 조례 개정 권고안에 따라 미비 조항 개정

2. 주요 내용

- 가. 보험 정의에 공제를 추가, 보험기관 정의에 공제회 추가(안 제2조)
- 나. 가입대상 명확화(안 제3조)
- 다.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내용 일부개정(안 제4조)
- 라. 보험료 납입 주체 명확화(안 제5조)
- 마. 보험료 청구과정 내 행정적 지원 추가(안 제7조)
- 바. 보험기관 보험료 지급 현황 통보 의무 추가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
 - 성별영향평가: 검토의견 없음[복지지원과-21007(2023.5.26.)호]
- 라. 기 타
 - 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3-908호
 - 가) 예고기간: 2023. 5. 30. ~ 2023. 6. 19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문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”를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와”를 “고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과”로, “보험을”을 “보험 또는 공제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군수와”를 “군과”로, “보험 회사를”을 “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을”로 한다.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가입대상)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 2.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
 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
- 제4조의 제목 “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”을 “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군민들”을 “군민”으로, “홈페이지”를 “누리집(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)”으로 한다.
- ① 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보험료는 고성군의 예산의 범위에서”를 “군수는 보험료를”로, “납입”을 “납입하여야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보험금 신청)”을 “(보험금 청구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상속인”을 “상속인 또는 대리인(이하 “피보험자 등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신청”을 “청구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외 된다”를 “제외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보험가입”을 “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신청을”을 “청구를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.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 등을 입은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-----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
1. “군민안전보험”(이하 “보험”이라 한다)이란 <u>고성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</u> 을 말한다.	1. ----- ----- <u>고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고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과 보험 또는 공제를</u> -----.
2. “보험기관”이란 <u>군수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</u> 를 말한다.	2. ----- <u>군과</u> ----- ----- <u>보험회사 및 공제회 등을</u> -----.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가입대상) <u>고성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(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)을 피보험자로 한다.</u>	제3조(가입대상)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u>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</u> 2. 「 <u>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</u> 」 제6조제1항에

	<p>따라 <u>군의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</u></p> <p>3.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4조에 따라 <u>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</u></p>
<p>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① <u>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한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장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.</u></p>	<p>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등) ① <u>보험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한 보험기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와 한도액으로 한다.</u></p>
<p>② <u>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, 보상범위,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② ----- ----- ----- <u>군민</u>----- <u>누리집(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)</u> -----.</p>
<p>제5조(보험료 납입방법) <u>보험료는 고성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한다.</u></p>	<p>제5조(보험료 납입방법) <u>군수는 보험료를 ----- 납입하여야 -----.</u></p>
<p>제7조(보험금 신청) <u>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</u></p>	<p>제7조(보험금 청구) ① ----- ----- ----- <u>상속인 또는 대리인(이하 “피보험자 등”이라 한다)</u>----- <u>청구</u>-----</p>

<p>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----.</p> <p>② <u>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8조(보험금 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<u>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</u></p>	<p>제8조(보험금 지급 제외) ----- ----- ----- <u>제외된다.</u> -----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<u>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</u> -----</p>
<p>제9조(보험금 지급) <u>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9조(보험금 지급) ① ----- ----- <u>청구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	<p>② <u>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수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.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</p>

고성군 주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
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안은 적절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(보완), 현실반영 하는
등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함.

작성자: 안전관리과장 윤경병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